제364회국회
(정기회·폐회중)

#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12월1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상정된 안건**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1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윤일규·이규희·오제세·송옥주·금태섭·조승래·전재수·손혜원·강병원·김정우·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 1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4회 국회(정기회·폐회중)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컴퓨터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오늘 안건이 기초연금법과 아동수당법에 대한 의결인 관계로 관계 실국장들만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송갑석·김해영·전현희·권칠승·최인호·이학영·윤관석·정재호·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2.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정춘숙·윤일규·이규희·오제세·송옥주·금태섭·조승래·전재수·손혜원·강병원·김정우·이용호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모두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기동민 위원님께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 기동민 위원입니다.

오늘 소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 중 3건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 2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으며 1건의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기초연금액을 25만 원과 30만 원으로 차등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급자 간 소득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30만 원을 받는 수급자 일부의 연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확정된 2019년도 예산을 토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도록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법안 심사에 애써 주신 남인순 위원님, 맹성규 위원님, 전혜숙 위원님, 정춘숙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김순례 위원님, 김승희 위원님, 윤종필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등 소위원님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달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제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제세 위원** 지금 법안소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정부에서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수** 복지부차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지난……

**○오제세 위원** 아니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하위 20%까지 해서 저희들이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 어르신들 중에 빈곤이 더 안 좋으신,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더 추가적으로 드리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면서 감액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현재도 소득하위 70%에 지급을 하면서 약간 상회하는 그런 계층에게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감액 규정이 있습니다. 20%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의 감액이 필요해서 일부 어르신들은 3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어르신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못 미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감액 규정은 그런 차원에서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되고 이 대상 인원이 얼마고 또 금액이 얼마인지…… 똑같은 얘기 그냥 그대로 하면 뭐해요? 이 내용을 알려달라는 거지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150만 명 정도가 하위 20%에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은 30만 원 인상이 최대로 되고요. 그중에서 약 10만~20만 정도는 감액 규정에 따라서 30만 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 소득 역전 현상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됩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소득 역전이라는 게 이를테면 현재 19% 수준에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 만약에 30만 원을 다 받게 되면 위에 있는 20% 수준보다 더 액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액수 단위로 감액을 했는데 이번에는 자동 방식,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행정적인 불편함을……

**○오제세 위원** 몇 명이 역전이 되고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만 명 중에서 10만~20만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오제세 위원** 자세한 자료가 나와야 법안 심사가 된 거지 구체적인 숫자도 안 나오고 심사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자료 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 숫자를 얘기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권덕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답변해요. 심사 다 끝나 가지고 의결하는 마당에 자료도 제시 안 하고 의결하면 됩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허락하시면 연금정책국장이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하위 20%로 볼 때 한 151만 명의 어르신들이 해당이 되시고요. 그분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감액 규정에 따라서 감액되는 분들이 7.5% 정도가 됩니다.

**○오제세 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지금 7.5% 정도 감액되는 분들이 얼마나 감액이 되느냐는 그분들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감액이 심하게 많이 되는 분들은 4만 9000원이 감

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감액이 가장 적게 되는 분들은 1000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전에는 소득인정액이 조금만 바뀌어도 2~3만 원씩 감액이 됐던 부분들을 금년 초에 저희들이 제도를 개선해서 감액 단위를 1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거의 자기의 소득구간에 맞게 감액분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도록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30만 원으로 올려서 20%에 대해서 5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전체 올린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그러니까 151만 명의 어르신 중에서 135만 명 정도는 30만 원을 그대로 다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오제세 위원** 5만 원 올린 겁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그게 600억입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4000억입니다.

**○오제세 위원** 1년에?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추가로 들어가는 돈들이 5만 원을……

**○오제세 위원** 이게 어떻게 4000억이 돼요, 5만 원을 올린 건데?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151만 명에 대해서……

**○오제세 위원** 5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600억밖에 더 돼요, 5만 원 올린 건데?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6000억 정도, 그러니까 1년 치……

**○오제세 위원** 아니, 100만 명에 대해서 5만 원 올리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1년 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곱하기 12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 4월부터 인상을 하기 때문에 세 달분은 빠지게 됩니다.

**○오제세 위원** 아홉 달?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4000억이다 이거지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정확하게는 4200억입니다.

**○오제세 위원** 4200억인데 이번 법을 개정하면 여기서 얼마가 주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4200억을 다 나눠드리게 되는데 4200억이……

**○오제세 위원** 4200억이 더 증가되는데 지금 이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액한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예, 그렇습니다.

**○오제세 위원** 감액 금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그러니까 감액 금액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한 부분에 따르면 300억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금액은……

**○오제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000억이 증액이 되는데 300억을 감액하는 법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제세 위원** 지난번에 아동수당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위 10%를 안 했다가 다시 전체 다 했잖아요. 이것 작업하는 비용이 또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 류근혁** 기초연금법에 있는 감액제도는 저희들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소득하위 20%하고 21% 사이의 소득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20%에 있는 분들하고 21% 분들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한 1만 원도 차이가 안 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20% 분들한테 5만 원을 드려 버리면 21%, 22%, 23%까지 소득이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감액제도를 도입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미 기초연금법…… 70%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70% 받는 분들과 71% 받는 분들의 차이를 그런 식으로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금을 드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역전

부분들, 좀 불합리해 보이는 부분들을 방지하고자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오제세 위원** 나는 이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명수**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유재중 위원님.

**○柳在伸 위원**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명수** 아니, 우선 기초연금 먼저 좀 해 주십시오.

**○柳在伸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이명수** 혹시 기초연금 관련해서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이게 아시는 것처럼 예산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사후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동안은 부부 간에 같이 연금을 탈 경우 감액을 한다든가 감액 사례나 근거는 있는데, 이게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오제세 위원님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런데 제가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아동수당에서 상위 10%를 제거한 대상자를 달리하는 것하고 동일 대상자를 두고 지급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방금 담당 국장이 설명하였듯이 기존에 가장 소득이 낮은 분부터 70%까지 죽 소득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하면서 그 소득의 순서는 바뀌지 않게끔 그걸 유지하는 것이 국가 지급의 한 원칙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만약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이 다 증액돼 버리면 지급 전에 낮은 소득계층에 있던 분이 지급을 받음으로 해서 못 받는 사람보다 더 높아져 버리는 소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 경계 구간에 있는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못 받는 분들이. 그래서 그걸 감하기 위한 것이라서…… 이미 기초연금제도 안에 그런 제도가 시행이 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번에 30만 원으로 증액을 할 때에도 그 경계 구간에 있는 분들은 형평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액 구간을 두는 것입니다.

**○오제세 위원** 지금 장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소득하위 20%가 150만 명이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하위 20% 150만 명에게는 5만 원씩을 더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오제세 위원** 그러면 하위 21%·22% 여기하고 20%하고도 5만 원 차이가 생깁니다. 거기도 이 역전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그 구간을 4만 9000원 깎고……

**○오제세 위원** 5만 원을 올렸는데 21%는 5만 원 안 올렸잖아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안 올렸습니다.

**○오제세 위원** 그러면 21%하고 20%가 5만 원의 갭이 생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래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는 4만 9000원을 깎고 그 아래 가면 1000원을 깎아서 이렇게 1000원 단위로 죽 깎아 나갑니다. 그래서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제세 위원** 그렇게 4000억을 추가로 주는데 300억을 깎아서 그걸 맞춘다는 것도,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위 20%와 25% 사이에도 갭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 자세히 계산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장관님 말씀이 100% 맞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명수** 기초연금 관련해서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으시면 아동수당 관련하여 유재중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柳在伸 위원** 이 아동수당은 정말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상정한 아동수당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후반기 첫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물론 이 아동수당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인데 2006년도 저출산·고령사회 1차 기본계획을 마련한 후 지금까지 143조 원의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거든요. 예산을 사용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05년 1.07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에 1.05명으로 더 떨어졌어요. 올해는 1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까지 나오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재정만으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결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를 재정지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의결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보면 4조 원의 세수부족분을 국채 발행을 확대해서 메우기로 했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증가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세부담률이 OECD 최하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 수준의 복지재정을 지출한다면 국가재정은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재정을 고려해서 보편적 복지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확대하는 선별적·선택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세대는 고성장을 경험한 현세대보다도 더 힘든 경제여건에서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재정을 조금이라도 아끼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표결까지 원하지는 않지만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유재중 위원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재하도록?

**○柳在仲 위원** 예.

**○위원장 이명수** 오제세 위원님.

**○오제세 위원** 여기에 '취학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아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취학일은 왜 들어간 겁니까?

**○전혜숙 위원** 수정안을 보세요. 뺐습니다.

**○오제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제출 생략 및 축조심사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려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서 위원회 의결로 이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의거해서 오늘 의결할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했기 때문에 축조심사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비용추계서 생략하는 게 잘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좀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을 채택해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고, 유재중 위원님의 의견은 소수의견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능후 복지부장관님께서 법률안 처리에 대해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동수당법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안 심의에 애써 주신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된 두 법률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동수당법 개정은 보편적 복지로서 아동수당의 지위를 확립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는 모든 아동이 국

가와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건강한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신 어르신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결해 주신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책으로 완성되기까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하위 법령 마련부터 지급 시스템 구성까지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여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능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우리 장정숙 위원님 거수를 미처 못 봤는데 말씀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보건복지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일 국내의 첫 영리 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제주 녹지국제병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개설허가 후에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으로 영리 병원 개설허가 결정을 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국인 진료금지 제한을 뒀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없지요?

현재 제주특별법, 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외국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장관님, 당시 복지부의 회신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1월 4일에 복지부가 '허가 조건에 명시가 돼 있고 또 이를 근거로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면 국내법상 처벌받는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회신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 결정에 명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특별법 309조에 따라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15조 1항,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에 따라서 의료법 제15조 1항을 준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회신을 주셨단 말입니다.

의료법 제15조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지부 유권해석하고 의료법이 정면충돌하고 있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거기에서 특별한 어떤 조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 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해 주는 조건으로 거기에 내국인 진료를 못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국인을……

**○장정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하신 겁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에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셨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하지만 당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주체인 녹지그룹이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도 복지부는 사업계획서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이게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업 승인 특례 조항에도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게 조건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도 승인을 해 줬어요.

장관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제3호에 보면 사업시행자의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분명하게 제출받아서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심사하고 검토 확실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뭐……

**○장정숙 위원** '박근혜 정권 때 전 정진엽 장관이 하신 거니까 나는 몰라' 이것은 국민들한테 안 통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보건복지부는 계속 존재해야 되니까요.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 검토 결과 거기에 유사사업에 대한 경험 증명 자료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없지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도 사업 승인이 나갔습니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복지부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제가 이것 사업 승인서 받았습니다.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장관님, 이 영리 병원의 허가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안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부였기 때문에 안 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만약 영리 병원이 보편화되거나 확대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 영향이 있겠지만……

**○장정숙 위원** 시간 조금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첫 영리 병원 허가임에도 허가권자는 제주도라면서 문서로 세 차례 정도 답변만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 위원 생각에 허가 시에 손을 놓고 지켜본 복지부는 도대체 누굴 위한 복지부냐는 겁니다.

장관님, 아무리 봐도 복지부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영리 병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뿐인 것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늘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환자만을 진료할 수 있도록 개정하십시오. 이러한 길만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충분히 검토하셔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시행자가 의료 경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은 없지만 거기에 보면 녹지병원이 중국 BCC 그리고 일본 IDEA하고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해서 업무협약을 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미비하지만 그런 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정숙 위원** 너무 봐주기식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정숙 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인권과 허가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나머지 특별구역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복지부는 영리 병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힙니다.

저는 녹지병원은 여러 시간을 거쳐서, 또 제주

도라는 아주 한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한정된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영리 병원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제주도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법에서 외국인 환자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소관 부처는 사실 행안부하고 국토교통부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존경하는 윤일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일규 위원** 장관님, 제가 그냥 넘어가려 하다가 조금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특별한 조건일 경우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참고할 사항이지 장관님이 명령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그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장관님이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국가가 사회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걸 국가에서, 예를 들자면 비보험 환자가 온다든지 내국인이 온다는 것을 국가가 강제한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조건은 그 진료에 임하는 의사가 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사항하고 다르지요. 그건 일종의 인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이나 관념에서 장관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첫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그동안의 조건에 보면 하자가 있는 경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조건, 그런 조건을 충족하고 합리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러면 앞에 이런 조건이 어쩔 수 없이…… 합법적인 것은 아마 검증을 하겠지요. 검증을 하는 경우에 그 검증 속에서 하자가 없다고 밝혀지면 이걸 받아들이고 지금 국민이 걱정하는 대로 비영리 병원이 경쟁에서 실제로 영리 병원보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은 그 취약점 중의 하나가, 우리가 의료전달체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케어를 하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실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보강하고 강력하게 만들면 비싼 곳으로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오히려 이것은 법률적인 사안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한계가 제한되어 있다고…… 지금 자꾸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강제로 하면 내국인은 못 온다 하지만 그것은 내국인의 법률적인 개념을 오해하고 계신다는 걸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결단으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정치적으로 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느냐…… 지금 보면 보건의료노조나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불이 붙고 있어요. 사회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적인 답변은 제가 보기에 자꾸 옹색해집니다. 그것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생각할 것은 법률적으로 보완할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실 있는 준비를 좀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윤일규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답변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강화되는 그런 비영리의료체계가 영리의료체계보다도 국민들에게 더 낫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 주면 사실 근본적으로 영리 의료병원 문제는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즉시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지금 말씀하신 사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의 후속조치나 관련되는 동향에 대한 조치나 필요한 일들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

**○위원장 이명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예산 최종 통과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에 제가 감사합니다.

문제는 증액된 예산 상당 부분이,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심지어 난임시술을 지원하는 것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상당 부분이 최종 심사과정에서 빠진 데 대해서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혹여 그것이 지역별 SOC사업 예산 증액하는 데 연계가 되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복지부 차원에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항 중에 빠진 것이 있다면 보완을 할 수 있다면 보완을 좀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풀비 성격에서 일부 지원한다든가……

특히 이런 상황이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지원을 해야 될 중증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삭감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분들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제 행정 경험으로 봐서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 위원(17인)**

| | | | |
|---|---|---|---|
| 기동민 | 김광수 | 김명연 | 김상희 |
| 김순례 | 김승희 | 남인순 | 맹성규 |
| 오제세 | 유재중 | 윤소하 | 윤일규 |
| 이명수 | 장정숙 | 전혜숙 | 정춘숙 |
| 최도자 | | | |

**○청가 위원(5인)**

| | | | |
|---|---|---|---|
| 김세연 | 신동근 | 신상진 | 윤종필 |
| 이개호 | | | |

**○출석 전문위원**

| | |
|---|---|
| 수석전문위원 | 박종희 |
| 전문위원 | 송병철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보건복지부

| | |
|---|---|
| 장관 | 박능후 |
| 차관 | 권덕철 |
| 기획조정실장 | 김강립 |
| 인구정책실장 | 양성일 |
| 정책기획관 | 박민수 |
| 보건의료정책관 | 이기일 |
| 인구아동정책관 | 이강호 |
| 연금정책국장 | 류근혁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의약품안전국장 | 김영옥 |
| 바이오생약국장 직무대리 | 강석연 |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남인순·백혜련·이상헌·금태섭·김삼화·김상희·이학영·박홍근·우원식·제윤경·추혜선 의원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남인순·기동민·신창현·김병기·이재정·이학영·이원욱·김해영·송갑석·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남인순·백혜련·이상헌·금태섭·김삼화·김상희·이학영·박홍근·우원식·제윤경·추혜선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김종훈·심상정·홍익표·노웅래·김종대·윤소하·이정미·추혜선·우원식·이용호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황주홍·최도자·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김선동·김용태·민경욱·추경호·신보라·이종명·이종배·조훈현·최연혜·김정재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남인순·기동민·신창현·김병기·이재정·이학영·이원욱·김해영·송갑석·이춘석·박광온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6일 회부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성일종·金成泰·이명수·주호영·민경욱·원유철·박맹우·곽대훈·박덕흠·김기선 의원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강석호·임이자·정유섭·주호영·정갑윤·박명재·추경호·곽대훈·원유철·신보라 의원 발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7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7. 김민기·김영주·김영호·김종민·김철민·노웅래·박범계·박정·안민석·윤준호 의원 발의)
12월 10일 회부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기동민·이철희·김상희·박완주·윤일규·전현희·민병두·김병기·윤후덕·정춘숙·이재정·전혜숙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10. 남인순·서영교·박선숙·표창원·백혜련·박정·기동민·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김해영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도자·황주홍·김종회·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17건 12월 11일 회부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이찬열·전혜숙·김경진·황주홍·이동섭·이상헌·김정호·김삼화·김철민·장정숙·유동수·박용진·전재수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신상진·김진태·문진국·강효상·김상훈·김기선·김도읍·김경진·전희경·김규환·심재철·민경욱·이종명·이완영 의원 발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신상진·정갑윤·김진태·김경진·심재철·전희경·김규환·이종명·이완영·홍문종·홍문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1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8. 12. 6. 송기헌·심기준·박재호·민홍철·이석현·표창원·이상헌·박정·박범계·안민석·노웅래 의원 발의)

12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